



의 안 번 호	제53호
회 의 연 월 일	2026. 5. 4. (제587회 회의)

심의
·
의결
사항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경무인사기획관)
제출연월일	2026. 4. 21.

인사담당관, 인사운영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재난·안전관리 및 민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격무분야 종사자를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250호, 2026. 4. 7. 공포, 2026. 4. 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포상 수상자, 재난·안전 및 민원업무 근무자 근속 우대(안 제26조 제2항, 제4항)

정부포상을 수상하거나, 재난·안전 및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감 근속승진 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재난·안전 분야 우수자 및 해당 분야 정부포상 수상자 정원 외 특별승진(안 제37조제4항)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 운영하던 정원 외 특별승진을 재난·안전분야의 성과우수자 및 관련 정부포상(국가재난관리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함

다. 승진임용 제한 사유 요건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1호)

징계의결 등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중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라. 승진임용 시 당연퇴직 등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 6조의2 신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징계의결 요구”를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나”를 “우수하거나”로, “돈보인”을 “돈보인 경찰공무원 또는 정부포상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제26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제1항제2호나목”을 “제1항제2호”로, “국무총리”를
“특별승진 심사대상 또는 국무총리”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 --.
1. <u>징계의결 요구</u> ,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 <u>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u> ----- ----- -----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6조의2(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u>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와 법 제27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제26조(근속승진) ① (생 략)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
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
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
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
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1년

<신 설>

<신 설>

및 당연퇴직 사유의 확인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6조(근속승진) ① (현행과 같
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우수하거나-----

- 돋보인 경찰공무원 또는 정
부포상을 받은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
비·대응·복구를 상시 수행
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 1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
를 상시 수행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

④ 임용권자는 경감으로의 근속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
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
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
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임용할 수 없다. <단서 신
설>

⑤ ~ ⑦ (생략)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 ③ (생략)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참공무원: 1년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다만, 제2
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

----- 특별승진 심사대
상 또는 국무총리 -----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239